

수원지방법원 2020. 1. 30 선고 2019나61137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재판경과

수원지방법원 2020. 1. 30 선고 2019나61137 판결

수원지방법원 2019. 3. 7 선고 2017가단10769 판결

전문

원고승계참가인, 피항소인

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대

피고,항소인 망 C의 소송수계인

1. D

2. E

3. F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강호

변론 종결 2019. 12. 19

판결선 고 2020. 1. 30

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. 3. 7. 선고 2017가단10769 판결

주 문

1.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원고승계참가인에게, 피고 D은 3/ 7지분에 관하여, 피고 E, F는 각 2/ 7지분에 관하여,용인시 처인구 H 전 466m2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, 2,3, 4, 5, 6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기)부분 주택 17m2, 같은 도면 표시 7, 8,9, 10,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니부분 창고 14m 2, 같은 도면 표시 11, 12,13, 14, 15, 16, 17, 18, 19, 20, 21,22,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O부분 꽃가게 103m2(이하 통틀어 '이 사건 각 건물'이라 한다)를 각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

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 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『 민법 제1643조에 의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당해 토지임대차가 건물기타 공작물의 소유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는 바,피고 들 주장의 임대차가 이 사건각 건물의 소유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(오히려 망 C가지목이 '전'으로서 농지인이 사건

토지에 건물 신축을 위한 농지 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보인다), 피고 등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J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 승계 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.

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정중판사 강두례판사 정덕수

별지